

## ■ 최신 법령 ■

### [지적재산권]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국가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참여지원 확대

최승수 변호사 | 김태형 변호사

#### 1. 개정내용 및 평가

- (1)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를 내용으로 한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(이하 '개정안')이 2012년 5월 23일 개정되어,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. 기존 법에서도 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”이란 표제로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.

자세히 살펴보면, 기존 법은 “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하한의 근거가 되는 사업금액을 “둘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”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기업이 일괄발주하는 방식으로 종전규정의 취지를 잠탈하는 문제를 방지했습니다. 또한 “요청할 수 있다”를 “요청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의무를 보다 분명히 했습니다(제24조의2 제2항). 나아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(제24조의2 제3항).

- (2) 다만, 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,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, ③ 국방·외교·치안·전력(電力),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.
- (3)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, 실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.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 다만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대기업의 참여제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정하고,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적용을 권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(제24조의2 제4항).

## 2. 다운로드 :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일부개정(법률 제11436호, 2012. 11. 24. 시행)